

남양주종합운동장 지역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남양주시 남양주종합운동장 지역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이하 ‘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남양주종합운동장 지역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 푸드트럭 영업지로만 사용 가능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나. 대 수 : 1대(고정영업)

다.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 2층 실내체육관 앞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이 지정한 장소(별첨 참고)

라. 면 적 : 10㎡

마.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바목의 제과점 영업

2. 전대(사용·수익)기간 : 계약일 ~ 2025. 12. 31. (2년 8개월)

3. 사용료(연간) : 금247,560원(금이십사만칠천오백육십원) ※ VAT포함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매년 재산정

4.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만 유효

5. 응모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 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접수기간 : 2023. 5. 3.(수) 09:00 ~ 5. 12.(금) 18:00
- 제 출 처 :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 제출서류 : 붙임참고
 -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현장 점검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공유재산 전대(사용·수익)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환경,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상권 분석 확인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현장 주변 여건 미확인에 의한 모든 불이익은 응모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각종 용품 및 집기류는 응모자 부담임을 알립니다.
- 방문시 담당자가 현장 안내 및 설명 진행

8. 대상자 선정 절차

-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
- 대상자가 1인일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전대(사용·수익)추진
다만,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先 순위자가 전대(사용·수익)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 순위자에게 전대(사용·수익)

9. 전대(사용·수익)

- 전대(사용·수익) 신청자는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유재산 전대(사용·수익)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전대(사용·수익) 권리는 추첨결과 차순위자로 결정됩니다.
- 공유재산 전대(사용·수익)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푸드트럭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전대(사용·수익)는 취소됩니다.

10. 사용료의 납부

- 1차년도 사용료는 전대(사용·수익) 후 전대(사용·수익) 개시일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 2차년도 이후부터의 사용료는 연 단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11. 기타 유의사항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 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인 1지역, 1세대 1인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모결과 두 군데 이상 당첨이 되었을 경우 1지역에서만 전대(사용·수익)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전대(사용·수익)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 가.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나.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 다. 1세대 2인 이상 영업행위 시
 - 라. 1인이 남양주종합운동장 내 지정된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할 경우
- 사용자는 전대(사용·수익) 받은 목적을 남양주도시공사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전대(사용·수익)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전대(사용·수익)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 2개월 전에 취소 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2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의의가 있는 때는 남양주도시공사의 해석에 의합니다.

12. 계약, 위치,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전화번호 031-560-1251

[붙임-1]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			
	연락처(휴대폰)		전자 메일주소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종	
	판매음식종류			
	영업시간			
	푸드트럭 규모	톤	종업원수	
비 고				
남양주종합운동장 내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은 이 신청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2]

사 업 계 획 서

○ 대 표 자 :

○ 업소명칭(예정) :

○ 판매음식 종류 :

○ 영업운영계획

○ 위생, 환경, 안전 대책

○ 기타사항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임-3]

- 푸드트럭 영업지 위치



- 현장 사진



[붙임-4]

푸드트럭 영업지 전대(사용·수익) 조건

☐ 재산의 표시

구 분	소재지	면 적	사용범위
푸드트럭 영업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 (실내체육관 앞)	10m ²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

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인에게 전대(사용·수익) 한다.

제1조(사용목적) 해당 공유재산은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푸드트럭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3년 0월 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00원(금-----원)으로 한다.

② 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매년 재산정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에서 대행하여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남양주시장 발행)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고, 잔여 기간분에 대한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사용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재산의 부과금) 사용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하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하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지정된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

제9조(사용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취소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사용조건에 위배한 때
3. 사용하는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각종 사용료(공과금 포함)를 3회 이상 연체하는 때
5.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 중대한 안전 및 위생 관련 사고 등이 2회 이상 발생한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6. 사용인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해 지상 물건의 사용권을 상실한 때
7. 사용자가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 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전대(사용·수익)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도 시공사가 인정한 경우
8. 1인이 2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둘 중 어느 1곳
9. 사용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푸드트럭의 소유권

을 상실한 경우

7. 기타 공사에서 시설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공사는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사용인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사용 취소시 손해배상) ① 본 사용조건의 위반으로 사용을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공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시에는 영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사용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 취소원서를 공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공사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공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공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 만료 후 승인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사용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관계법령의 적용) 기타 본 사용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용인 (인)